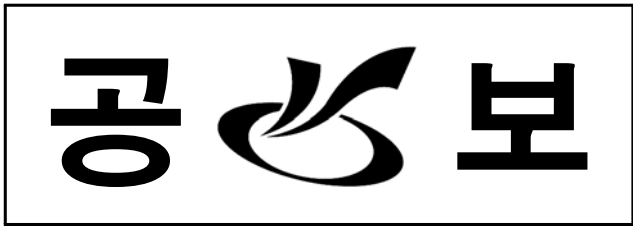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관의 장
람	

제 656호
2008년 9월 17일 수요일

차 례

조 례

-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974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-781호 공시송달공고 6

회							
람							

조 례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

2008년 9월 17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74호

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“동사무소”를 “동 주민센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동사무소”를 “동 주민센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동의 사무소”를 “동 주민센터”로 한다.

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동 주민센터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(제18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관할구역
검암경서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승학길 508 (검암동 606-8번지)	인천광역시 서구 행 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 조중 별표의 관할구 역과 같다
연 회 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간촌1길 14 (연희동 712번지)	
가정 1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정자1로 5 (가정동 483-1번지)	
가정 2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동우약수길 21 (가정동 290-67번지)	
가정 3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문화1로 103 (가정동 565-4번지)	
신현원창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봉사길 5 (신현동 294번지)	
석남 1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명가골2길 29 (석남동 465-3번지)	
석남 2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거북시장길 30 (석남동 573번지)	
석남 3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서달산길 133 (석남동 488-23번지)	
가좌 1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감중절2길 162 (가좌동 145-43번지)	
가좌 2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윗마을길 41 (가좌동 30-105번지)	
가좌 3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희망1길 6 (가좌동 212-13번지)	
가좌 4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염나무길 18 (가좌동 335-2번지)	
검단 1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번지	
검단 2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3-13번지	
검단 3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5블럭 3롯데	
검단 4동 주민센터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당하지구 5블럭 2롯데	

②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법정동란과 관할구역란 중 “불노동”을 “불로동”으로 한다

③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명칭란과 관할구역란 중 “불노동”을 “불로동”으로 한다

④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 중 “동사무소”를 “동 주민센터”로 한다.

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“동사무소”를 “동 주민센터”로 한다.

⑥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사무소”를 “주민센터”로 한다.

⑦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 중 “동사무소”를 “동 주민센터”로 한다.

[별표]

구청 및 동 소재지(제2조 관련)

구 분	소 재 지
서 구 청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(심곡동 244번지)
검암경서동	인천광역시 서구 승학길 508 (검암동 606-8번지)
연 희 동	인천광역시 서구 간촌1길 14 (연희동 712번지)
가정 1동	인천광역시 서구 정자1로 5 (가정동 483-1번지)
가정 2동	인천광역시 서구 동우약수길 21 (가정동 290-67번지)
가정 3동	인천광역시 서구 문화1로 103 (가정동 565-4번지)
신현원창동	인천광역시 서구 봉사길 5 (신현동 294번지)
석남 1동	인천광역시 서구 명가골2길 29 (석남동 465-3번지)
석남 2동	인천광역시 서구 거북시장길 30 (석남동 573번지)
석남 3동	인천광역시 서구 서달산길 133 (석남동 488-23번지)
가좌 1동	인천광역시 서구 감중절2길 162 (가좌동 145-43번지)
가좌 2동	인천광역시 서구 윗마을길 41 (가좌동 30-105번지)
가좌 3동	인천광역시 서구 희망1길 6 (가좌동 212-13번지)
가좌 4동	인천광역시 서구 엄나무길 18 (가좌동 335-2번지)
검단 1동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번지
검단 2동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3-13번지
검단 3동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75블럭 3롯데
검단 4동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당하지구 5블럭 2롯데

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08-781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귀하께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수취인 불명)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08.10.20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,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등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2008년 9월 16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제 목 :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
2. 처분근거 : 건축법 제80조
3. 처분원인 : 건축법위반
4. 처분대상

성 명	주 소	위반위치	체납액(원)	압류할 재산내역		
				재 산 구 분	지번 (차명)	지목/면적 (등록번호)
윤창한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4-1, 2층동	인천 서구 가좌동 104-1	41,140	차량	트레이드와이드로우 겔로퍼이노베이션밴 와이드봉고1톤	인천82다80** 인천82나53** 인천7모55**

5. 공고기간 : 2008.09.16. ~ 2008.09.29.
6. 게시장소 : 시보,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
7. 기타사항 :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, 납부의사가 있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 032)560-4712)